|  |  |  |
| --- | --- | --- |
| **《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工信部節[2010] 제3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공업정보화 관리부서:  공업정보화부는 재생산업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재생품 생산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재생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제 이를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29일  **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산업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재생품 생산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재생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재생품 인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재생품이라 함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재생기술과 프로세스를 채용해서 폐기 공업제품을 수선, 복구, 개조함으로써 그 성능과 품질이 원형의 신제품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공업정보화부가 재생품 인정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관련제도, 기준 및 실시안을 제정하며 인정활동을 전개하고 《재생품 리스트》를 반포한다.  성급 공업정보화부서는 인정신청의 초심을 책임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인정신청을 공업정보화부에 추천한다.  **제4조** 재생품의 인정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 과학적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감독을 접수한다.  **제2장 인정 신청**  **제5조** 재생품의 인정은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며, 신청기업은 하기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경내에 등록하고 자주적인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제품이 국가의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산업정책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행정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재생품의 대량생산능력을 갖추고 재생 기술, 프로세스가 선진적이고 실용적이고 성숙되어야 한다.  (5) 제품의 품질이 원형 신제품의 품질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하고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강제성 기준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은 이 방법 및 관련 인정요구에 따라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인정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생품인정 신청서  (2) 법인 영업허가증 부본의 복사본  (3)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생산허가증, 강제성 제품인정증서  (4) 집행하는 제품표준  (5) 제품의 모델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서류  (6) 제품의 생산프로세스공정 및 재생기술 설명서  (7) 품질관리 시스템 서류  (8) 제공해야 하는 기타자료.  **제7조**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초심을 마치고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은 공업정보화부에 추천해야 한다.  **제3장 인정 평가**  **제8조** 공업정보화부는 평가자격에 부합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함)에 위임하여 재생품 인정의 구체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9조** 인정기구는 이 방법 및 관련요구에 따라 하기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재생품 인정 실시가이드》를 제정하여 공업정보화부에 비치한 다음 인정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업종과 재생품의 특징에 따라 관련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인정업무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인정업무를 규범에 맞게 실시하고 인정보고서를 제시하는 동시에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인정제품에 대한 기술비밀을 유지하고 인정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생품 인정은 서류심사, 현장에 대한 평가와 심사, 제품의 검사와 실험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인정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내에 서류심사를 필하고 서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인정기구는 20일 근무일내에 현장 평가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팀은 현장 평가와 심사가 끝난 후 10일 근무일내에 인정기구에 현장 평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현장 평가 심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인정기구는 관련제품의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제품모델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인정신청 제품을 관련자격이 있는 제3자 측 검사기구에 위임하여 제품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인정기구는 서류심사, 현장 평가와 심사,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10일 근무일내에 인정보고서를 완성하여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결과 반포와 표식 관리**  **제12조** 공업정보화부는 인정보고서를 심사하고 인정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생품 리스트》에 편입하여 사회에 공시하는 동시에 공업정보화부 및 인정기구 사이트에 발표한다.  **제13조** 인정에 통과한 재생품은 제품의 선명한 위치 또는 그 포장에 재생품 인정표식(표식의 기본양식은 별첨참조)을 사용한다.  **제14조** 인정을 받은 재생품의 생산과 관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기업은 즉시 인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품이 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그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인정자격이 취소된 제품에는 재생품 인정표식을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재생품 인정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위나 개인은 누구나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상황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6조** 이 방법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발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재생품의 표식 |  | **关于印发《再制造产品认定管理暂行办法》的通知**  工信部节〔2010〕30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  为推动再制造产业健康有序发展，规范再制造产品生产，引导再制造产品消费，我部制定了《再制造产品认定管理暂行办法》。现印发你们，请遵照执行。  　　　　　　　　　　　　　　　　　　　　　　　　　二○一○年六月二十九日  **再制造产品认定管理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推动再制造产业健康有序发展，规范再制造产品生产，引导再制造产品消费，建立再制造产品认定制度，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再制造产品，是指采用先进适用的再制造技术、工艺，对废旧工业品进行修复改造后，性能和质量达到或超过原型新品的产品。  **第三条**　工业和信息化部负责再制造产品认定工作的管理和监督，制定相关制度、标准及实施方案，组织开展认定工作，发布《再制造产品目录》。  　　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负责认定申请的初始审查，向工业和信息化部推荐符合条件的认定申请。  **第四条**　再制造产品认定工作遵循公开、公平、公正、科学的原则，接受社会监督。  **第二章　认定申请**  **第五条**　再制造产品认定由企业自愿提出申请，申请企业应具备以下基本条件：  　　（一）在中国境内注册，具有独立法人资格；  　　（二）产品符合国家法律法规及相关产业政策要求；  　　（三）国家对产品有行政许可要求的，应获得相应许可；  　　（四）具备再制造产品批量生产能力，采用的再制造技术、工艺先进适用、成熟可靠；  　　（五）产品质量达到或超过原型新品，且符合国家相关的安全、节能、环保等强制性标准要求。  **第六条**　企业根据本办法及相关的认定要求向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提出认定申请，并提交以下申报材料：  　　（一）再制造产品认定申报表；  　　（二）法人营业执照副本复印件；  　　（三）依法应取得的产品生产许可证、强制性产品认证证书；  　　（四）执行的产品标准；  　　（五）产品型式试验报告和（或）相关质量证明文件；  　　（六）产品生产工艺流程及再制造技术说明；  　　（七）质量管理体系文件；  　　（八）其他需提供的材料。  **第七条**　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对申报材料进行初始审查，出具审查意见，将符合条件的报送工业和信息化部。  **第三章　认定评价**  **第八条**　工业和信息化部委托具有合格评定资质的机构（以下简称认定机构）具体承担再制造产品认定工作。  **第九条**　按照本办法及相关要求，认定机构应：  　　（一）制定《再制造产品认定实施指南》，经工业和信息化部审查备案后，用于指导和规范认定工作；  　　（二）根据行业和再制造产品特点，选取具备相应资格条件的专家，参与实施认定工作；  　　（三）规范实施认定工作，出具认定报告，并对报告负责；  　　（四）依法保守认定产品的技术秘密，不得从事认定范围内产品的开发、生产和销售。  **第十条**　再制造产品认定采取文件审查、现场评审与产品检验相结合的方式进行。  　　（一）认定机构收到申报材料10个工作日内，应完成文件审查，并编制文件审查报告。  　　（二）文件审查合格后20个工作日内，认定机构应组织专家组进行现场评审；  　　专家组应在现场评审结束10个工作日内，向认定机构提交现场评审报告，并对现场评审结论负责。  　　（三）认定机构应依据相关的产品标准，对申请企业提交的产品型式试验报告和（或）相关质量证明文件进行审查。需要时，对申请认定的产品委托具备相应资质的第三方检验机构进行产品检验。  **第十一条**　认定机构在结束文件审查、现场评审和产品检验后的10个工作日内，完成认定报告并提交工业和信息化部。  **第四章　结果发布与标志管理**  **第十二条**　工业和信息化部对认定报告进行审查，符合认定要求的纳入《再制造产品目录》并向社会公告，同时在工业和信息化部及指定认定机构的网站上发布。  **第十三条**　通过认定的再制造产品，应在产品明显位置或包装上使用再制造产品认定标志（标志基本式样见附件）。  **第十四条**　经认定的再制造产品的生产和管理等发生重大变化影响产品质量时，企业应及时向认定机构报告。对不再符合认定条件的，由工业和信息化部公告取消其认定资格。被取消认定资格的产品不得继续使用再制造产品认定标志。  **第十五条**　任何对再制造产品认定过程和结果有异议的单位和个人，可向工业和信息化部提出异议，工业和信息化部根据情况进行调查处理，并反馈结果。  **第五章　附　则**  **第十六条**　本办法由工业和信息化部负责解释。  **第十七条**　本办法自印发之日起实施。  附件：再制造产品标志 |